

합 의 서

201 년 월 일 경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사건에 대하여
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사고 내용

사고일시		사고장소	
가 해 자		가해차량	
피 해 자	주민번호 :		

2. 합의내용

합의금액	금 원 (₩)
합의사항	가. 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. 나.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.
채권양도	가.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,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. 나.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. 다.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,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.

3. 기타사항

- 가. 위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
- 나. 이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내용증명(또는 배달증명)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한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.(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.)

4. 첨부서류

- 가. 주민등록 등본 1부.
- 나. 인감증명서 1부.

201 년 월 일

가해자		피해자(또는 피해자의 대리인)	
성 명	(印)	성 명	(印)
주 소		주 소	
주민번호		주민번호	